

#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774호)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. 11. 28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고 성 군 수  
나. 회 부 일 자 : 2002. 11. 30  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2. 12. 17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· 의결

### 2. 개정사유

- 행정자치부의 기금관리 실태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부합되지 않은 일부조항 및 규제사무를 정비하고자 함.

### 3. 주요골자

- 가. 정의(안 제2조)  
나. 기금의 조성(안 제3조)  
다. 기금의 운용 · 관리(안 제4조)

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건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고성군 재난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· 관리를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 · 시행해 오던 우리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
- 재난관련 시설물을 정의하고, 기금의 조성과 운용 · 관리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○ 2002. 12. 17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